수입식품 정보 알리미 (2023-59)

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시행 알림

1. 식약처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수입제품 중 부적합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추가 제조·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정제가공용 원료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식용향료(식품첨가물) 등 원료성 제품을 계획수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중입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전, 적극행정으로 **'23. 5. 8일부터** 다음과 같이 **계획수입 대상을 확대 운영함**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현행	⇒	개선(확대)
대상	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		1.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 **2.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** **가. 식품첨가물 향료** **나. 정제·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**
요건	1. **최근 3년간** 해당 해외 제조업소에서 해당 품목의 부**적합 이력이 없을 것** 2. 신청인이 **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** 해당 품목을 **수입신고한 이력**이 있을 것 (**매년 수입실적**이 있어야함)		좌 동

※ 붙임 : 수입식품등 계획수입통관 대상 및 절차 1부.

📖 **수입검사 지시 확인**
수입식품정보마루(impfood.mfds.go.kr) → 알림자료 → 공지사항
📖 **관련문의 :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☎ 051-602-6211**
(동 알리미서비스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☎ 051-602-623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

2023. 5. 8.

청렴한 식약처
국민 안심의 시작

【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】 ※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.
▶ **부조리 신고** : 식약처 홈페이지 "국민신문고 > 공직자 부조리 신고" 코너
▶ **공익 신고** : 식약처 홈페이지 "국민신문고 > 신고센터 > 부패 · 공익신고 상담" 코너